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6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6월 18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산업진흥원의 정관을 통한 무분별한 상근임원의 증원을 제한하고자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장이 이사장,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도록 함 (안 제7조 제2항).
-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제4항)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2항 중 “이사장은 이사 중에서”를 “대표이사,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”으로 하고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7조(임원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이사장은 이사 중에서</u>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</u></p>	<p>제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align="center"><삭제></p>	<p>제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대표이사,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</u>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들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7조제2항 중 “이사장은 이사 중에서”를 “대표이사,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”으로 하고,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7조(임원) ① (생략)	제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이사장은 이사 중에서</u> 시장이 임명한다.	② <u>대표이사,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 직 이사 및 감사</u> 는 시장이 임명한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</u>	④ <u>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들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.</u>